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2년 4월

• 예규·판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 소 6669, 2022.04.12)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20.6.22. 개업하여 ○○○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21.12.2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0.3.31. ○○○ 토지 1,944 m² (지분 2/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7.1.와 2020.9.1.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고, 202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000 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한 후, 2020.7.23. 202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인 000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

- 이후 청구인은 2021.5.16. 쟁점매입세액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21. 이를 거부하였음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위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거래처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2020.7.6.)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작성(2020.7.1.)하기 전인 202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인 점
 - ✓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그 토지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토지를 성토해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거래처에 매각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러한 형질변경을 통해 쟁점토지의 가치도 증가한 점(2020.12.10.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20년 000 원에서 2021년 000 원으로 상승함)
 - ✓ 토지조성공사는 구축물과 관련한 용역과는 별개로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세액 중 일부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이는 점

나.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 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 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 (조심 2021 광 3262, 2022.04.25)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00.11.30.부터 000 에서 건설업·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가 2008.7.30. 인적분할을 하여 같은 곳에서 설립된 후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 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2013.11.30.부터 AAA 와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었음
- 이후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이하 “쟁점 1 조항” 또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라 한다) 중 관계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 조 제 2 항 본문 및 같은 령 부칙 제 4 조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으로 2017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조특법 제 5 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액 이내의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함
- 000 청장은 2020.11.26. ~ 2021.1.8.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유예기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 원을 부인하고 재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 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8. 청구법인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경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이 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 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 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
-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14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으나 2015 사업연도에는 이 건 개정된 쟁점 1 조항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 4 조(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동 부칙에 따라 이 건 개정된 쟁점 2 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임

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7, 2022.03.30)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약 개발회사를 대신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사업
- A 법인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B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XX 년 중순 완공할 예정이고,
 - BB 공장 준공 후 BB 공장 내에 클린룸*을 설치할 예정임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함
- A 법인의 생산설비는 KIAT 인증을 거쳐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A 법인이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7.가.1) 및 3)에 해당함

(질의요지)

- (질의 1)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 324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 조제 4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 9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의 2 에 따른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2021.12.28. 법률 제 186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 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